

#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202,286,176	276,068,585
일반회계	8,254,820,820	247,644,625
특별회계	947,465,356	28,423,961
기타특별회계	947,465,356	28,423,961
코리아인태너셔널서킷 특별회계	3,500,000	105,0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0,956,492	928,695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420,000	222,6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7,752,264	15,232,56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258,000	187,74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1,331,985	639,960
소방특별회계	370,103,346	11,103,100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143,269	4,29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0,885,15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6,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2021년도에 한하여 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